

北韓과 국제금융기구: 이슈와 대응

장 형 수

- I. 들어가며
- II.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관련 이슈
- III.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후 제기될 이슈
- IV.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 지원
- V. 마치며

요약

최근 북핵 6자회담의 진전 상황에 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 내지 폐지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무엇보다도 북한경제 재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국제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첫 단계를 통과한다는 의미가 크다. 우리로서도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최대한 빨리 가입하여 북한개발을 위해 필요한 장기·저리의 양허성차관을 도입하고 국제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변화된 국제관계 동향과 신설·변경된 국제금융기구의 업무 등을 반영하여 기존 연구를 최대한 업데이트 및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바탕 위에서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북한이 삭제된 이후 단계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직후까지 예상되는 중요 이슈를 점검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가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를 지원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제사회, 특히 국제금융기구는 북한의 시장경제 개혁정책 및 대외 개방정책의 진전 정도와 연계하여 대북 자금지원 규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 한양대학교 국제금융학부 교수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조화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전면적이고 즉각적 개방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국제관례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국제사회에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과 비슷한 저개발국, 체제전환국에 대한 자금지원시 유예조항 및 사례연구를 통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마련도 필요하다. IMF, 세계은행, EBRD 등의 중동구와 중앙아시아 체제전환국의 초기 국제금융기구 개혁 프로그램의 실패 사례에서 대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I. 들어가며

최근 북핵 6자회담의 진전 상황에 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북한 경제회복에 필요한 국제민간투자 유치의 선결 과제이다. 물론, 본격적인 경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가 필수요건이기는 하지만 이를 향한 중요한 첫 발자국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로서도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최대한 빨리 가입하여 북한개발을 위해 필요한 장기·저리의 양허성차관을 도입하고 국제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양허성 자금지

원 수혜는 그 액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북한경제 재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국제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인증서’ 발급의 첫 단계를 통과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길이다.

美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지정은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에 가장 상징적인 이벤트인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어서, 북한은 이의 해제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 국내법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한 자금공여 안전에 대해 국제금융기구의 의사결정회의에서 미국 상임이사는 반드시 반대하도록 규정(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5)하고 있다.¹⁾ 테러지원국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

1)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shall instruct the United States executive director of eac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to use the voice and vote of the United States to oppose any loan or other use of the funds of the respective institution to or for a country for which the Secretary of State has made a determination under section 6(j) of the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50 U.S.C. App. 2405(j)) or section 620A of the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22 U.S.C. 2371).

으나, 이에 대한 유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Katzman, 2007). 북핵 6자회담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법의 적용에서 해제시키게 된다. 그러면 북한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신청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남북경제협력 외에 국제개발 협력이 북한 개발의 한 축으로 등장하게 되는 날이 멀지 않은 것이다.²⁾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변화된 국제관계 동향과 신설·변경된 국제금융기구의 업무 등을 반영하여 기존 연구를 최대한 업데이트 및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바탕 위에서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북한이 삭제된 이후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직후까지 예상되는 이슈를 집중 점검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가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를 지원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이슈를 어느 정도 다루었었지만 주로 일반론적인 서술에 보다 치중하고 있는 데 반해서 본 연구는 북한의 IMF 가입 전후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관련 이슈

북한 개발에 자금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있다.³⁾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삭제하더라도 북한이 이들 국제금융기구에 실제로 가입해서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받는 과정에는 상당한 난관이 존재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반드시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후에도 대북 외교차원의 협상력 유지를 위해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당기간 지연시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이 반대하지 않더라도 일본, EU 등이 적극 반대하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불투명하게 된다.

1. 국제통화기금(IMF)의 가입조건 및 절차

IMF 가입국은 2002년 동티모르, 2007

2) 북한 개발을 위해 국제금융기구 등 다자간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서는 장형수 외(1998), 장형수·박영곤(2000a, 2000b), 장형수(2000), Chae and Zang(2001, 2002), 김성철(2001), Zang(2002), 이상준·이성수(2002), 이종운(2003), Babson(2004), 남성욱(2004), 안병민·성원용(2006), Kim(2007), 이상준·김원배(2007), 장형수(2008) 등이 있다.

3)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설립 협정문상 북한이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해야 가입 및 자금지원수혜가 가능하다. 한편 북한은 EBRD에 가입하더라도 일정기간 자금수혜국이 아닌 일반 회원국 자격만 주어지게 된다. 이 경우 정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기금을 통한 개발자금 수혜가능성만 있다.

년 1월에는 몬테네그로가 새로 가입함으로써 185개국이 되었으며, 현재 UN 가입국 중 북한, 쿠바, 안도라, 모나코, 나우루, 마케도니아, 투발루만이 IMF 미가입국이다. IMF 가입 조건과 관련하여 국내외 일각에서는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다거나 최소한 북한이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할 의사를 확고히 밝혀야 IMF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왔다. 그러나 1978년부터 IMF, 세계은행과 가입 협상을 시작한 중국이 당시에는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한 국가가 아니었음을 보면 이 주장의 정당성은 상당히 훼손된다. 중국과 IMF 출장팀과의 가입 협상시 주요 의제는 중국의 IMF 투표권 확보 문제, 대만 축출 문제, 중국에 공여할 양허성 자금지원 확보 문제 등 중국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시키기 위한 유인을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차원의 협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IMF는 가입 희망국의 자격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By-laws, Section 21-a)⁴⁾, 가입 후에는 모든 회원국은 IMF 협정문에서 정한 제반 의무사항⁵⁾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미국 등에서는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북한이 IMF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 전에 ‘심도 있는’ 대북 경제 조사를 시행하고, 외환보유고 등 주요 경제 지표를 IMF 가입 전에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북한의 IMF 가입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는 “가입희망국이 IMF에 가입을 신청하면 상임이사회⁶⁾는 공식조사(formal investigation)를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토론과 예비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에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여야 하며, ... 상임이사는 가입 결정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가입희망국에 어떠한 정보도 요청할 수 있다.” (Rules and Regulation, D-1)⁷⁾는

4) “(a) Any country may apply for membership in the Fund by filing with the Fund an application, which shall set forth all relevant facts. (b) The Executive Board shall report on all applications to the Board of Governors. When an application is submitted to the Board of Governors with a recommendation that the applicant country be admitted to membership, the Executive Boar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applicant country shall recommend to the Board of Governors the amount of the quota, the form of payment of the subscription, and such other conditions as, in the opinion of the Executive Board, the Board of Governors may wish to prescribe.”

5) IMF 가입국의 의무는 IMF 협정문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안정적인 환율제도의 유지’와 제8조와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의 두 가지이다.

6) IMF의 협정문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는 IMF 협정문 개정, 신규회원국의 가입 승인, 기존 회원국의 퇴출, 쿠틀 증액과 가맹국간 쿠틀비중 조정, 상임이사선출 등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을 24명의 상임이사로 구성된 상임이사회에 위임하고 있다. 상임이사회는 총투표권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과반수 상임이사의 참석으로 되어 있으며, 의결정족수는 행사된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이다.

7) “When a country applies for membership in the Fund, the application shall be placed promptly

조항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⁸⁾

하지만 이는 가입심사를 충분히 하기위한 일반론적인 조항이지 이를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대 해석으로 보인다. 가입 희망국이 가입을 신청하고 IMF 상임이사회가 이를 심사하기로 결정하면 경제실태조사단이 파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회원국들의 IMF 가입 사례를 살펴보면, 통계의 정확성이나 통계제출의 성실성 등이 IMF 가입의 전제조건이 된 경우는 없었다. 구소련 붕괴 후 중동구 체제전환국의 경우, IMF 가입 신청서 기초적인 시장경제 통계조차도 작성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IMF에 가입하였었다.

IMF에 가입희망국이 가입을 신청하면 IMF 상임이사회는 충분한 토론과 예비조사를 시행한 뒤 가입국에 대한 공식조사(formal investigation)를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Rules and

Regulation, D-1). IMF 상임이사회가 가입희망국에 대한 공식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IMF는 가입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가입희망국과 토의하기 시작한다. 공식조사 후 상임이사회는 이사회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가입 건을 총회에 제출하여 별도의 회동을 갖지 않고 총회의 투표에 부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총회까지 가입 신청 건을 보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Rules and Regulation, D-1). 만약 상임이사회가 가입희망국에 대한 공식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면 상임이사회는 이 결정에 대한 이유와 함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ules and Regulation, D-1). IMF 상임이사회가 가입희망국의 가입 추천을 총회에 할 때, 상임이사회는 사전에 가입 희망국과 협의하여 IMF 쿼터 규모와 출자금 납입방식 등 총회의 주요관심사항을 함께 총회에 추천하여야 한다(Section 21-b).⁹⁾

before the Executive Board, and a reasonable time shall be allowed for discussion and preliminary investigation by the Executive Board before a decision is reached to proceed with the formal investigation. If this decision is in the affirmative the Fund may proceed to obtain all relevant information and discuss with the applicant any matters relating to its application. Any Executive Director may request such information to be added to the list requested of the applicant as in his opinion is relevant to the decision to be made. The Executive Board shall then decide whether to submit an application for membership with its views to the Board of Governors for a vote without meeting or hold the application until the next meeting of the Board of Governors. If the Executive Board decides not to proceed with its formal investigation of an application for membership, it shall report that decision to the Board of Governors with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8) 실제로 이 조항을 명시적으로 적용한 경우를 저자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9) 북한이 IMF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IMF 상임이사회에서 벌어질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글로서는 장형수(2007)가 있다.

IMF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총회(통상 서면투표)에서 총투표권의 2/3 이상을 보유하는 과반수 가입국이 참가하여 이들이 행사한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¹⁰⁾

회원국을 IMF로부터 축출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총투표권의 8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IMF 신용 연체국이 IMF 신용이용 비적격국으로 지정된 후에도 연체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상임이사회는 총 투표권의 70% 이상을 대표하는 상임이사의 찬성으로 동 회원국의 투표권 등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IMF 협정문 16조 2-b항), 투표권 행사 정지 기간 중에는 총회 및 상임이사회에서의 투표권 행사 외에도 협정문 개정의 참가, 동 회원국의 위원, 대리위원 및 상임이사 등의 직무수행 등의 권한도 박탈된다. 2007년 8월 현재 라이베리아(03년 3월 이후), 짐바브웨(03년 6월 이후)의 IMF 투표권 행사가 정지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IMF에서 축출된 국가는 없다.

2. 북한의 IMF 가입시 주요 결정사항

IMF 쿠티는 회원국의 IMF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IMF가 가입국의 GDP, 외환보유고, 수출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쿠티의 25%는 금 또는 자유사용가능통화(달러, 엔, 유로, 파운드)로 납입하여야 하며, 쿠티의 75%는 자국통화로 납입해도 된다. IMF의 쿠티는 IMF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을 위한 신용공여 재원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투표권을 산출하고 IMF 신용 이용한도 및 양허성 자금지원의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북한의 경우는 북한과 비슷한 GDP, 교역규모를 가진 기존 가입국의 계산쿠티를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쿠티가 2007년 현재 29.27억 SDR(약 45.4억 달러)이고 한국은행이 추산한 남북한 경제규모 격차 약 30배를 적용하면, 북한의 IMF 쿠티는 전체의 약 0.045%인 최대 1억 SDR(약 1.55억 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¹¹⁾ 비슷한 쿠티를 납입한 국가는 캄보디아, 콩고공화국, 타지키스탄, 부룬디, 말리 등이다. 북한은 이 중 25%인 2,500만 SDR(약 3,875

10) 2007년 10월말 현재 IMF 회원국의 투표권은 미국(16.79%), 일본(6.02%), 독일(5.88%), 프랑스(4.86%), 영국(4.86%) 등 5대 출자국이 총 투표권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3.66%), 이탈리아(3.2%), 사우디아라비아(3.17%), 캐나다(2.89%), 러시아(2.7%) 등이 주요 주주이고, 한국의 투표권은 전체의 1.33%로서 호주(1.47%), 브라질(1.38%), 스페인(1.39%) 등과 비슷하다.

11) 시장환율을 사용하여 북한의 1인당 소득을 달러로 환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제할 때, 북한의 2006년 1인당 GNI는 500달러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즉, 2006년 기준 북한의 경제규모는 한국의 1/60에 못 미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북한의 쿠티는 약 7,200만 달러가 되며, 이 중 달러·유로 등으로 납부해야할 액수는 1,800만 달러가 된다.

만 달러)은 금, 달러 등으로 납입해야 하는데 현재 북한의 외환사정상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의 쿠퍼와 향후 IMF로부터의 대북 자금지원 규모가 연계되는 구조이므로 북한의 IMF 가입시 쿠퍼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국 정부의 정치·경제적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IMF 가입시 회원국은 대외지급과 관련한 IMF 협정문 제8조와 제14조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한다. IMF 협정문 제8조는 차별적 또는 다자간 통화협약이나 경상거래상의 외환규제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는 경상외환거래를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한편 IMF 협정문 제14조는 경상거래상의 대외지급 제한을 잠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제14조를 선택한 국가는 국제수지사정이 구조적으로 호전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중에 있는 외환규제를 철폐하고 제8조국으로 이행하여야 한다.¹²⁾ 북한은 IMF 가입시 당연히 제14조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제8조국으로 이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세계은행(World Bank)의 가입조건 및 절차

세계은행은 중장기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와 최빈국에 대한 양허성자금을 지원하는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로 구성된다. IBRD의 회원국은 2007년 8월말 현재 185개국이며, IDA는 166개국이다. IBRD 가입자격은 IMF 회원국에만 주어지며, IDA 가입은 IBRD 회원국에게만 주어진다. 통상적으로 IMF 가입을 신청한 국가는 IBRD, IDA에 동시에 가입을 신청하게 되며, IMF 가입이 확실시되면 IBRD, IDA 가입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다. IBRD 가입을 희망하는 IMF 회원국은 가입신청서를 IBRD에 제출하면 IBRD는 출자주식수 등 가입조건을 결정한 후 IBRD 총회 투표에 회부한다. 투표는 통상적으로 6개월간에 걸친 서면투표로 시행된다. IDA 가입절차도 IBRD와 동일하다. IBRD¹³⁾와 IDA¹⁴⁾에 각각 가입하기 위해서는 총 투표권의 2/3 이상을 보유하는 가입국의 과반수가 투

12) 2008. 3. 20일 현재 한국을 포함한 166개국이 제8조국이고 19개국만이 제14조국이다.

13) IBRD 회원국의 투표권은 2007년 현재 미국(16.41%), 일본(7.87%), 독일(4.49%), 프랑스(4.31%), 영국(4.31%) 5대 출자국이 총 투표권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중국(2.79%), 이탈리아(2.79%), 사우디아라비아(2.79%), 캐나다(2.79%), 러시아(2.79%) 등이 주요 주주이다. 한국은 0.99%이다.

14) IDA 회원국의 투표권은 2007년 현재 미국(14.27%), 일본(10.89%), 독일(6.99%), 프랑스(4.32%), 영

표에 참여하여 행사된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IBRD의 출자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최고자본금¹⁵⁾으로 구성되는데 회원국이 실제로 출자하는 납입자본금은 전체의 약 6%에 불과하며, 납입자본금의 10%만 달러, 유로 등 교환성통화로 납입하면 되므로 북한이 IBRD 가입으로 필요한 교환성 통화 필요액은 북한의 IMF 쿼터 납입액에 비하면 아주 미미할 전망이다. 한국은 IBRD 납입자본금 114.8억 달러 중 1억 4,500만 달러를 부담하여 전체의 0.9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교환성통화는 약 1,00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의 출자금비율을 최대로 잡아서 한국의 1/30로 가정하더라도, 북한의 IBRD 납입금은 최대 500만 달러 이하이며 이 중 교환성통화 납입금은 최대 약 30만 달러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4.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가입조건 및 절차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07년 말 그루지야가 가입함으로써 현재 67개 회원국(역내 48개국, 역외 1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ADB의 자금은 일반재원(OCR: Ordinary Capital Resources)과 특별기금으로 조성된다. 일반재원은 역내 개발도상국의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통상 업무수행에 사용되며, 특별기금은 대부분 양허적 조건의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아시아개발기금(ADF)이 대표적이다. ADB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이지만 역내 가맹국 8개 그룹과 역외 가맹국 4개 그룹을 대표하는 12명의 상임이사로 구성된 상임이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한 결정권한을 행사한다.¹⁶⁾

ADB는 명시적인 가입조건을 가지고 있다. 즉, 아시아 역내국의 경우 UN ESCAP, UN 또는 UN 전문기구의 가맹국으로서 북한은 이미 충족한 상태이다. ADB에 가입하려면 총회에서 총 투표권의 3/4 이상을 보유하는 2/3 이상 가입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ADB 회원국의 투표권은 일본과

국(5.05%) 5대 출자국이 총 투표권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3.55%), 캐나다(2.95%), 이탈리아(2.82%), 중국(1.93%) 등이 주요 주주이다. 한국은 0.57%이다.

- 15) 최고자본금(callable capital): 실제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자재원으로서는 직접 사용될 수는 없으나 IBRD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납입을 요청할 경우 납입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제금융시장 차입시 담보가 될 수 있어 IBRD의 용자재원 조달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금이다.
- 16) 미국, 일본, 중국은 단독 이사국이고, 나머지 9명의 상임이사는 지역그룹별로 사전에 합의된 보직순환계획에 따라 순환제로 상임이사를 맡는다. 대만,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과 같은 그룹에 속한 한국은 항상 그룹을 대표하는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상임이사회의 의사결정권수는 총투표권의 2/3을 대표하는 과반수 상임이사의 참석이며, 의결정족수는 행사된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이다.

미국이 각각 12.756%를 점유하여 최대주주이고 중국(5.44%), 인도(5.35%), 호주(4.92%), 인도네시아(4.65%), 캐나다(4.47%), 대한민국(4.32%), 독일(3.75%) 등이 주요 주주이다. 따라서 ADB의 투표권 25.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두 나라만 반대하면 북한의 ADB 가입은 봉쇄되는 구조이다. 즉, 일본과 미국이 공동으로 총회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Ⅲ.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후 제기될 이슈

1. 북한의 IMF가입 후 통계제출 이슈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특히 IMF에 대한 통계제출과 연례정책협의를 기본 사항이다. IMF 회원국은 IMF에 통계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IMF는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한 통계를 추산하여 국제사회에 제공할 책무가 있다. 북한이 IMF에 가입하면 미국, 일본, EU 등은 북한의 외환보유고, 국민소득, 국가재정 등에 대한 통계의 조기 제출을 압박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자

국의 자세한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는 것이 대해 큰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와 다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통계작성 능력이 부족하여 실제로 경제통계를 작성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개연성도 있다.

국제금융기구는 회원국이 자국의 통계를 추정해낼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충분한 통계산정 능력이 생길 때까지 실질적인 '유예기간'을 설정한 전례가 많다. 이 기간 동안 국제금융기구는 회원국이 통계작성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유예기간 동안에는 불충분한 통계도 수용하고 있다. 예로서 IMF 가입 후 5~7년이 지난 1990년대 후반까지도 IMF는 동구 체제 전환국들의 실무 관리들에게 이자율, 중앙은행 계정, 통합재정수지 등 IMF가 필요로 하는 통계항목의 개념에 관한 교육과 통계표 작성을 지도하였다. 1991년에 IMF에 가입한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직도 통계작성에 관한 기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¹⁷⁾ 또한 대부분의 저개발국은 국제금융기구의 통계관련 기술지원에도 불구하고 교통, 제도 미비 등으로 정확한 실상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북한도 저개발국과 체제전환국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북한이 IMF

17) 몽골주재 IMF 사무소장(2007년 8월)과 우즈베키스탄 IMF 연락관(2007년 5월)과의 인터뷰 내용.

에 가입한 후 통계제출 부담은 미국, 일본 등이 정치적으로 상식을 넘어서는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국제관례를 따른다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북한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2. IMF와의 경제정책협의 이슈

IMF와 각 회원국은 IMF협정문 제4조에 따른 정책협의를 통해 거시경제정책을 조율하며 IMF는 ‘정책권고’의 형태를 통해 회원국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책권고는 IMF 협정문상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IMF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회원국은 이를 상당 부분 수용해야 할 처지이다. 또한 세계은행, ADB 등으로부터의 자금지원 시에도 IMF 자금지원조건만큼 까다롭지는 않지만 수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일정한 자금지원조건이 설정된다. 국제금융기구와의 정책협의 의무 및 자금지원 조건이 실질적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의사를 개도국 회원국의 경제 정책에 반영시키는 통로 역할을 한다. IMF, 세계은행 등은 정책협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북한이 이를 ‘적절하게’ 따르지 않는 경우 북한이 이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은 하지만 테러지원국에 지정되어 있는 이란, 시리아, 수단처럼 분

격적인 자금지원은 받지 못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3.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조건 이슈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에는 인프라 건설 등 자금집행에 많은 시일이 걸리는 프로젝트 차관과 단기간에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차관이 있다. 국제금융기구는 북한에 대해 시장경제의 신속한 도입과 개혁, 개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통계 제공, 북한 경제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국제관례에 따라 양허성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인 빈곤감축 전략보고서(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를 작성해야 하는 등 북한 특성상 주저하거나 시간이 요하는 조건을 대북 자금지원의 전제로 설정하게 되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자금지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제금융기구 자금지원의 규모와 한도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IMF 자금지원의 한도는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쿼터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세계은행의 양허성 자금지원 창구인 IDA와 아시아개발은행의 양허성 자금지원 창구인 아시아개발기금(ADF)은 회원국의 소득, 인구보다는 경제운용,

경제구조정책, 사회정책, 공공부문 관리 및 제도, 국제금융기구 지원 프로젝트 운용 실적 등을 토대로 양허성 자금지원액을 지원 대상국에 배분하고 있다.¹⁸⁾

IV.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 지원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가 이루어지면 북한은 국제금융기구와 가입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금융기구는 북한 관련 워크숍 개최, 사전 연구조사사업, 대북 기술지원 등에 관심을 표시할 것이다. 한편, 국제금융기구는 내부적으로 북한 업무를 맡을 담당자를 검입 발령하여 향후 북한경제 실태조사단 파견에 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1. 국제사회의 對북한 지식전수와 기술지원 추진 지원

북한은 대학, 연구소, NGO 등 국제민간 부문의 지식전수(knowledge transfer)와 개발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시현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이후 10년간 수백 건에 달하는 해외 연수 및 교

육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평양에서의 외국기관 주최 경제세미나,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드물지 않게 개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부담을 덜 느끼는 중국, 베트남, 스위스, 스웨덴 등의 공공부문이 주최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는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수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1주일 이내의 단기 연수이며, 3개월 이상의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북한은 항상 교육훈련과 기자재지원을 연계시키고 있으며, 교육훈련보다 기자재지원 규모에 우선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북한은 시장경제 교육, 제도역량 강화(institution building) 등 북한의 개혁에 필요한 개발역량 강화보다는 농업, 보건의료, 정보통신(IT) 등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시장경제'라는 표현에 상당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서 경제교육 프로그램은 무역, 회계, 국제금융 등 국제거래관계 실무 위주이며 본격적인 '시장경제 교육'은 최소한 명시적으로는 곤란한 상황이다. 하지만 베트남, 중국 등에서 북한 공무원 교육훈련에 참여한 학자들은 실제로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교육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 공무원들도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가 다

18)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경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장형수(2008)를 참조하시오.

수라고 전언하고 있다.¹⁹⁾

대북한 지식전수 사업은 북핵 6자회담의 진전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북한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도 베트남, 중국, 중동구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지식전수 경험을 북한과 공유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동일한 언어, 문화, 풍습을 공유하고 있어서 지식전수에 있어 다른 국가보다 유리한 조건이나 북한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한테서 직접 지식을 전수받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우리만의 대북한 지식전수 사업은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한 지식전수와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IMF와 세계은행은 각 상임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북한이 이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이전에도 대북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장형수·박영곤, 2000a, p.29). 베트남의 경우 캄보디아 침공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이 중단되

었다가 캄보디아 철군으로 재개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베트남에 대한 자금지원이 재개되기 이전부터 세계은행, UNDP 등 국제기구와 일본, 서유럽국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기술지원을 수혜하였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면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금융기구는 未가입국인 북한에 대한 事前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미국, 일본 등 주요 주주의 견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 국제금융기구 활용 방안

국제금융기구 중에서 북한과의 협력에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이 세계은행이다. 세계은행이 미가입국인 북한과 협력을 한다는 자체가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에 도움이 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은행은 비회원국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 신탁기금²⁰⁾을 설치하여 비회원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한 전례가 있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못한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국제금융기구의 공식적인 지원경로를 통한 자금지원이 어려우므로 신탁기금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출연을 통해 미가입국에도 국제금융기구의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19)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 담당자와의 인터뷰(2007년 1월, 7월).

20) 신탁기금은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한 원조공여국 및 NGO 등의 자금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특정기관(일반적으로 국제기구)에 위탁 관리시키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하는 재원조달 형식으로서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보스니아, 코소보 등이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 지원받은 사례가 있다(장형수 외, 1998).

그러나 세계은행의 예산이 지원되는 '특별' 신탁기금 설립은 현재 상황에서는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되고 국제사회에 진입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보일 경우 한국을 포함한 북한 지원에 관심 있는 국가들로부터의 최대한의 출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참여는 가능할 전망이다. 세계은행이 참여할 경우 '북한신탁기금'은 세계은행에 위탁·관리되고 주요공여국과 세계은행이 협의한 기금사용원칙과 규정에 따라 자금 인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지 않았거나, 삭제되더라도 북일관계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요국의 참여가 없더라도 우리 정부의 재원을 주로 하고 몇몇 관심 국가가 참여하는 신탁기금을 우선 설립하여 세계은행, UNDP, UN ESCAP 등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그 이전단계로서 북한관료 대상 교육훈련 등 북한의 개발역량강화 등 기술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신탁기금과는 달리 세계은행 상임이사회의 승인이 필요 없이 가능한 사업이 세계은행의 북한 관련 워크숍 개최와 세계은행의 연구조사사업(ESW: Economic & Sector Works) 추진 등이 있다. 세계은행에 신규 회원국이 가입하면 세계은행은 본격적인 자금지원 사업 추진의 전단계로 반드시 연구조사사업을 시행한다. 따라서 세계은행에 가입한 후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사전 연구조사사업은 북한이 동의하면, 세계은행 자체 예산으로도 추진 가능하다. 물론 우리 정부가 사전 연구조사사업지원용으로 세계은행에 별도의 신탁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예산보다는 세계은행 주최의 워크숍으로 진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국의 스탠리재단 등 국내외 대학·연구소·재단 등이 자금지원을 하는 북한 관련 워크숍에 세계은행, IMF, ADB 등의 현직 간부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이미 다수 개최되었지만, 평양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국제금융기구 현직 간부가 참석한 경우는 2008년 2월 현재 아직 없었으며, 북한 관련 워크숍을 국제금융기구가 주관한 경우도 없었다. 이 방안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삭제되면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이후에 우리 정부는 IMF와의 협의를 통해 IMF 자체 재원으로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MF는 경제통계 작성을 위한 기본 개념, 실무매뉴얼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국제금융기구 운영 및 세계경제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실시를 통하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금융기구의 기술지원은 북한의 지원 요청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6자회담 또는 남북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에서 북한의 기술지원 요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나. 기타 국제기구 활용 방안

UN ESCAP은 북한이 회원국이므로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은 가능하다. 하지만 UN ESCAP은 재원이 부족하고, 특정 국가를 지원하기 보다는 아시아고속도로, 대륙 횡단철도 등 지역적 범위의 사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UN ESCAP이 북한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기탁한 신탁기금을 연계하여 우회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ADB에 설치한 ‘한국신탁기금’은 북한이 회원국으로 있는 UNESCAP, UNDP와의 공동사업 추진시 사용에 있어서는 우선권을 부여

토록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 외교부가 UN ESCAP에 매년 지원하는 KECF (Korea ESCAP Cooperation Fund)에 대한 지원액을 증액하고 그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간접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다.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UN ESCAP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는 협조사업도 있다. 2007년 10월 재경부가 세계은행에 위탁한 빈곤감소를 위한 신탁기금도 북핵문제에 추가적인 진전이 있으면 직간접적으로 북한 지원에 사용할 여지가 있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교류 확대 및 대북한 기술지원을 위해 북한이 아시아 역내 협력체에 참여하는 것은 추진할 만하다. 비회원국의 APEC 신규가입은 2007년까지 동결이나 2008년 APEC에 북한을 게스트(guest)로 초청하는 것은 회원국 간 합의와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의 결정으로 가능하다.

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적극 지원

가. 한국의 국제금융기구에서의 발언권 강화

2007년 현재 한국의 IMF 쿼터는 전체의 1.35%로서 세계 12위권인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쿼터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19위)이다. IMF의 투표권은 거의 쿼

터와 비례하며, 비상시의 차입규모, 상임이사국 지위 등도 기본적으로 쿼터와 상관관계가 크므로 우리의 IMF 쿼터를 증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IMF, 세계은행의 조직상 상임이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대부분의 중요 결정 사항은 상임이사회의에서의 개별 상임이사의 역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IMF에서 우리나라가 속한 그룹의 보직순환계획에 의하면 2008년 총회 때까지는 호주가 상임이사, 대리이사는 필리핀이 담당하게 되어있다. 동 보직순환계획은 한국이 쿼터 증액되기 전인 2004년에 결정된 것으로 우리 쿼터(1.35%)가 호주(1.49%)와 비슷하고 뉴질랜드, 필리핀보다 월등히 많으므로 우리나라가 속한 그룹에서 호주와 한국이 순번제로 상임이사를 담당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 북한의 IMF 쿼터 결정 문제 관련 대응

IMF 쿼터는 회원국의 IMF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IMF가 가입국의 GDP, 외환보유고, 수출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할당되는데 납입된 쿼터는 투표권을 산출하고 IMF 신용 이용한도 및 SDR 배분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북한의 쿼터는 최대 1억 SDR(약 1.55억 달러, 전체의 약 0.045%)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 중 25%인 최대 2,500만 SDR(약 3,875만 달

러)은 금, 달러 등으로 납입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북한의 외환사정상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의 쿼터와 향후 IMF로부터의 대북 자금지원 규모가 연계되는 구조이므로 북한의 IMF 가입시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국 정부의 정치·경제적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 북한이 IMF 가입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먼저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IMF에 가입하면 북한이 국가기밀로 간주하는 경제통계를 공개해야 하는 반면, ADB는 회원국에게 이러한 의무를 적극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이 IMF에 가입하기 전에 ADB에 가입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로 북한은 1997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제금융기구 중 유일하게 ADB에 가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IMF에 먼저 가입하지 않고 ADB에 가입하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의 역학구조상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ADB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최대 주주이며, 현재처럼 북한과 일본이 강경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북한의 ADB 가입은 일본의 반대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ADB에 가입하려면 총회에서 총 투표권의 3/4 이상을 보유하는 2/3 이상 가입국의 찬

성이 필요한데 ADB의 투표권 25.8%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두 나라만 반대하면 북한의 ADB 가입은 원천 봉쇄된다. 만약 참여한 북일 대치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이 IMF에 가입하더라도 일본이 북한의 ADB 가입 내지는 자금지원 수혜를 저지할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상황이다.

설령 북한의 ADB 가입이 성사된다하더라도 IMF 가입 없이는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이 성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ADB 우선 가입'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 자체보다는 그것이 상징하는 국제사회의 '인정'(endorsement)이 성공적인 국제사회 진입의 징표가 되기 때문이다.

V. 마치며

우리는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책·규범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시장경제 습득, 도입 및 개혁·개방정책을 천명하고 입안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사회, 특히 국제금융기구는 북한의 시장경제 개혁정책 및 대외 개방정책의 진전 정도와 연계하여 대북 자금지원 규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의사결정국들은 북한에 대해 시장경제 신속 도입과 개혁, 개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을 요구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전면적이고 즉각적 개방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국제관례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국제사회에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과 비슷한 저개발국, 체제전환국에 대한 자금지원시 유예조항 및 사례연구를 통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마련도 필요하다. IMF, 세계은행, EBRD 등의 중동구와 중앙아시아 체제전환국의 초기 국제금융기구 개혁 프로그램의 실패 사례에서 대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북한이 삭제되고 난 이후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전후의 주요 상황을 설정하고 각 상황별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은 테러지원국이 해제되면 북한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신청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국제사회와의 접촉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책·규범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자금지원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는 삭제되었지만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전이거나 또는 가입 후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받기까지의 과도기에 북한 개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K**

<참고문헌>

- 김성철, 2001, □□국제금융기구와 사회주의 개혁·개방: 중국·베트남 경험이 북한에 주는 함의□□, 연구총서 01-26, 통일연구원.
- 남성욱, 2004, “6자회담 이후 북한경제개발과 국내 및 국제사회 재원조달 방안,” 산업은행 창립5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자료 논문집.
- 안병민·성원용, 2006, □□북한 교통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06-15, 한국교통연구원.
- 이상준·김원배, 2007,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II): 기반시설 개발의 추진체계와 재원조달□□, 국토연구원.
- 이상준·이성수, 2002, □□국제적 협력을 통한 북한의 지역개발사업 추진 방안□□, 국토연구원.
- 이종운, 2003,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경제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KIEP 세계경제□□, 2003년 6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장형수, 2007, “장형수 전 국정원 국가정보관의 현장 분석,” □□신동아□□, 2007년 8월호, 동아일보사.
- 장형수, 2008,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통일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문(2008.2.21).
- 장형수, 2000, “재원조달 방안과 추진방식,” □□통일경제□□, 2000년 9월호, PP.21-28, 현대경제연구원.
- 장형수·박영곤, 2000a,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안□□, 조사분석 00-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장형수·박영곤, 2000b,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방안,” □□KIEP 세계경제□□, 2000년 5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장형수·이창재·박영곤, 1998,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98-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Babson, Bradley, 2004, “Designing Public Sector Capital Mobilization for the DPRK,” in Ahn, Eberstadt, and Lee, eds., *A New International Engagement Framework for North Korea*, Korea Economic Institute, Washington, DC.
- Chae, Suchan and Hyungsoo Zang, 2002, “Interim Development Assistance for North Korea: A Multilatera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6,

no.1, Spring/Summer 2002, 137-149.

Chae, Suchan and Hyungsoo Zang, 2001, "Development Assistance for North Korea" *Joint U.S. Korea Academic Studies*, Volume 11 The Korean Peninsula in the 21st Century: Prospects for Stability and Cooperation,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Washington, DC, January 2001, 211-223.

Katzman, Kenneth, 2007, *U.S. - North Korean Relations: An Analytical Compendium of U.S. Policies, Laws & Regulations*, Occasional Paper, Atlantic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Kim, Won Bae, 2007, "Policy Framework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Focusing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Re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and the Framework for Implementation, KRIHS.

Zang, Hyungsoo, 2002, "An Agenda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14, no.2, Fall 2002, 91-108.